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2
----------	-----

제출년월일 : 2001. 1

제 출 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정부의 불필요한 행정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 정비
 - 제17조1항 가산금과 증가산금 : 100분의10을 → 100분의5로 개정
 - 제17조2항 “납부기한 경과 한 후 90일 이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 징수한다”를 “체납된 사용료가 10만원을 초과 시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사용료의 1000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수정

3. 근거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행정규제 정비지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입법예고 결과

- 기간 : 2000. 11. 15 ~ 12. 7(20일간)
- 결과 : 제출의견 없음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가산금과증가산금)제1항중 “100분의10”을 “100분의5”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체납된 사용료가 10만원을 초과 시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사용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p>제1조 ~ 제16조(생략)</p> <p>제17조 (가산금과증가산금)①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②납부기한 경과한후 90일 이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 징수한다</p> <p>제18조 ~ 제19조 (생략)</p>	<p>제1조 ~ 제16조(현행과같음)</p> <p>제17조 (가산금과증가산금)①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②체납된 사용료가 10만원을 초과시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사용료의 1000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제18조 ~ 제19조 (현행과같음)</p>			

제 316 호

제 천 시 보

2000. 11. 17(금)

입 법 예 고

제천시 공고 제2000-593호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1월 일

제 천 시 장

제천시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개정안

1. 개정취지

정기시장관리 운영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정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17조 제1항중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개정
- 제17조 제2항중 “납부기한 경과한 후 90일이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징수한다”를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사용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의견제출

위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는 2000년 12월 7일까지 제천시 공업경제과에 서면, 컴퓨터통신, 전화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기타 참고사항 등